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관리과-24611
등록일자	2015.10.26.
결재일자	2015.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주무관	강남구동대리장	세무관리과장	기획경제국장		
장미경	김회동	송필석	10/26 김용운		
협조자					

- 5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



고액·상습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추진개요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중 재산 해외이전 및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해외로의 출국을 금지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2(출국금지 요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출국금지의 절차]

추진대상자

- 5천만원이상 여권유효자 : *****

(단위 : 명/백만원)

*		*****		*****	
**	***	**	***	**	***
**	*****	**	*****	**	*****

추진일정

- 출국금지 대상자 사실조사 : 2015. 10. 23. ~ 11. 4.
- 출국금지 대상자 예고문 발송 : 2015. 10. 27.
- 출국금지 의뢰(강남구→서울시) : 2015. 11. 5.(목)한(기간연장 포함)

2015. 10. 26.

강 남 구
(세 무 관 리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2(출국금지 요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출국금지의 절차) 																											
추진 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경위 : 지방세 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중 재산 해외 은닉 및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 해외로의 출국을 금지하여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예산 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우리구 재정확충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① 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타 기관 사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문가 자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고액·상습 채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 고액·상습 채납자중 보유재산에 대한 해외은닉 및 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해외로의 출국을 금지하여 채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출국금지 요청 등)
 - 압류,공매등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 해외도피 등으로 채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납자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출국금지의 절차)
 -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기간내에 출국금지 할 수 있다

II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5. 10. 23. ~ 12. 31.

○ 출국금지 조사 대상 : *****

(단위:명, 백만원)

*		*****		*****	
**	***	**	***	**	***
**	*****	**	*****	**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시장 명의로 일과 요청

- 자치구의 출국금지 요청대상을 시에서 일괄 수합하여 출국금지 요청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조(출국정지 절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하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관 업무에 관한 출국금지 요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한다

○ 출국금지(정지) 요청기간 :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

◇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제1항 제4호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내지 아니한 사람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6조(외국인의 출국의 정지)

- 법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III

세부 추진 계획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빈번한 해외 출입국 등 납세의식 결여 및 체납처분 회피자는 해외도피 및 재산의 해외이전 우려가 있으므로 출국금지 확행으로 자진납부 유도

출국금지 대상자 유효여권 소지자 명단 작성 : '15. 10. 26.

○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37명

출국금지 대상자 선정 및 제출 : '15. 10. 26.~ 11. 5.까지

① 출국금지(연장) 대상자 선정·완료 : '15. 10. 28.까지

- 아래의 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자

출국금지 대상자 선정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0조의5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국외이주하였거나 국외에 3년간 장기 체류중인 자
-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 미화 5만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자

② 출국금지 대상자 (출국금지·연장)요청서 제출 : '15. 11. 5.까지

- 자치구 : 출국금지 등 요청서 및 조사서, 기타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시로 제출
- ※ 연장 요청은 출국금지 종료 3일전까지 법무부에 제출

출국금지 요청 유의사항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5045호('14.2.24)

- 출국금지(기간연장) 요청시 출국금지 필요성을 반드시 소명
- 출국금지 기준은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로 목적의 타당성 적시
- 출국금지 요청은 출입국관리법(별지8호) 서식 의거 작성 및 입증서류 제출

출국금지 요청(시 → 법무부) : '15. 11. 7(목)

- 자치구 출국금지 연장 및 신규 대상자 일괄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연장) 해제(구 → 시 → 법무부) : 사유 발생일

- 사망자, 회생진행 중인 자, 파산선고 받은 자
- 재산의 압류·공매·담보제공·납세보증 등으로 채권확보된 자
※ 채권확보된 자라 함은 체납세액 전액 징수 가능한 경우임
-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 이행자 또는 납부 약속한 자
- 해외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는 자
- 해외도피 우려가 없고 사업목적상 출국하는 하는 자
-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IV

추진일정

- 2015. 10. 23. ~ 10.30. : 체납자 기채권확보 여부 등 자료 조사
- 2015. 10. 28. : 출국금지 예고 안내문 통지
- 2015. 11. 4. : 출국금지 대상자 제출

V

기대효과

- 납세의무가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납세의식 고취
-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여 세입목표달성에 기여
-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구현

- 붙임 : 1. 출국금지 요청서 서식
2. 고액·상습 체납자 조사서 서식(샘플) 1부
3. 출국금지 예고 안내문 1부
4. 5천만원 이상 유효여권 소지자 내역서 1부. 끝.

출국금지 등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문서번호 : 38세금징수과 - 수 신 : 법무부장관

요청일 : 2015. 11.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장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2항,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요청항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출국금지 <input type="checkbox"/> 출국금지기간 연장 <input type="checkbox"/> 출국금지 해제					
사건번호		최초요청 공문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과 담당 ○○○ (02-2133-○○○○)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김 ○ ○ (한 자) 金 ○ ○			성별	남
	주민등록번호				국 적	대한민국
	주 소				직 업	
	여권번호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요청기간	2015. 11. 11. ~ 2016. 05. 10.					
요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 체납자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을 수정 신고한 후 미납하여 2013년 11월에 마포구청에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과세하였으나, 고액의 지방세(85,234,740원)를 체납하여 수차례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완납할 의지가 없는 상태이며, 본인 명의의 소유 재산도 없어 조세채권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 - 아울러 체납자는 서울특별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고, 최근 해외로의 잦은 출입국 사실 등으로 볼 때, 언제든지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하고자 함.					
소명자료	- 체납자 조사서 1부. - 기타 증빙서류(체납내역, 압류내역, 재산내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여권발급내역,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끝.					

고액 상습 체납자 조사서(예시)

체납자	성 명	김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체납내역 및 체납경위

- 체납내역 : 2013년 11월 과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1건 80,000,000원
- 체납경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해 수정신고하고 이를 미납하여 2013년 11월 마포구청에서 과세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납부의지 없이 체납하고 있음

■ 압류현황

- 부동산 : 해당 없음
- 차량 등 동산 : 해당 없음
- 예금 등 채권 : 우리투자 증권 계좌 1건 압류 후 추심하였음

■ 거주실태

- 체납자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5길 ○○, ○○○호(일원동)'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고, 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8길 ○○, ○○○호(구의동)'에 주소를 두고 부부가 별도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체납자는 현재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입국 조사 결과 2015년에만 4회 출입국 한 사실이 있는 등 납부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조사

- 체납자 : 부동산 등 본인 명의 재산 전혀 없음
- 처(조○○) : 부동산 등 처 명의 재산 전혀 없고, 2014년도에는 처 명의로 '송파구 문정동'을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한 사실 있음
- 자녀 : 김○○(결혼 하였음) 명의 2013년 취득 차량 1대 있음

■ 사업장조사

- 체납자 명의 사업장 운영 내역

연번	사업자번호	법인명(상호)	대표자	개업일	소재지	폐업일
1			김○○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계속 사업
2			김○○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계속 사업
3			김○○		서울 강남구 삼성동	2014.06.13.

- 처(조경님) 명의 사업장 운영 내역

연번	사업자번호	법인명(상호)	대표자	등록일	소재지	폐업일
1			조○○		서울 송파구 문정동	

■ 유효여권 조사

- M○○○○○○○ : 발급일 2010.06.15. 유효일 2020.06.15.

■ 출입국 조사

출국일자	입국일자	출국일자	입국일자	비고
2012.09.11.	2012.09.12.	2013.06.18.	2013.07.01.	
2013.08.07.	2014.01.21.	2015.02.05.	2015.02.09.	
2015.05.10.	2015.05.23.	2015.05.24.	2015.06.25.	
2015.08.31.	2015.09.10.			

- 체납자는 최근 5년간 출입국 사실을 조사한 결과, 총 7회 출입국하였고 2015년에만 현재까지 4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이 있음
- 체납자는 고액의 지방세(80백만원)을 체납하였고, 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정황을 보면 언제든지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조사자 의견

- 상기 체납자는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에서 특별 관리하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로 2008년도 사

업소득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미납하여 2013년 11월 마포구청에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을 과세하였음에도 이를 미납하여 2014년 3월 1일자로 우리 시로 이관되어 그동안 수차례 징수독려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80백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체납자는 2003년부터 법인 등 회사 총5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지방세 과세 후 미납된 다음부터는 본인 명의로 재산을 전혀 취득한 바가 없고, 처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소재지도 불분명하면서 최근 2015년에는 해외로 총 4회에 걸쳐 출국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드러나지 않은 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고 세금납부를 회피가 추정되는 등 조세에 대한 전형적인 고질적 납세 기피자로 판단되며
- 체납자는서울특별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제4호)로 분류되어 공개되었고,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해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등으로 언제든지 체납자 본인은 해외로 재산 은닉과 도피를 할 우려(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5 제1항 제4호)가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2에 의거 체납자 조사 및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반드시 출국금지가 요구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 .

위 조사자

서울특별시 ○○구 ○○○과 지방세무주사 ○ ○ ○ (인)